

예산총칙

2022년도 본예산

제1조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회 계 명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계	827,510,165	24,825,303
일반회계	817,392,080	24,521,762
특별회계	10,118,085	303,541
의료급여기금	1,211,660	36,349
건축안전	249,410	7,482
주차장	8,657,015	259,710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2022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다.

제4조 2022년도 계속비 사업은 없다.

제5조 2021년도 예산 중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예비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회계

- 일반예비비: 8,110,783천원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000,000천원

2. 주차장특별회계: 1,461,575천원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3,800,000천원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 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9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국고·시비보조금, 교부금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 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